

의안번호	제583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3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30일

발의자 : 유상용·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용규·박재주
이양섭 의원

1. 제안 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급증은 실내 중심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활동량 감소와 기초체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급속한 개인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사회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회 및 학교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 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1. 18.]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조례 제정과 별도로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청소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음.

※ 청소년단체 지원 현황

연도	지원 단체 수	총 지원금(천원)	비고
2021	15	71,500	1개 사업
2022	15	71,500	1개 사업
2023	14	136,000	2개 사업
2024	14	136,000	2개 사업